

Understanding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②

1.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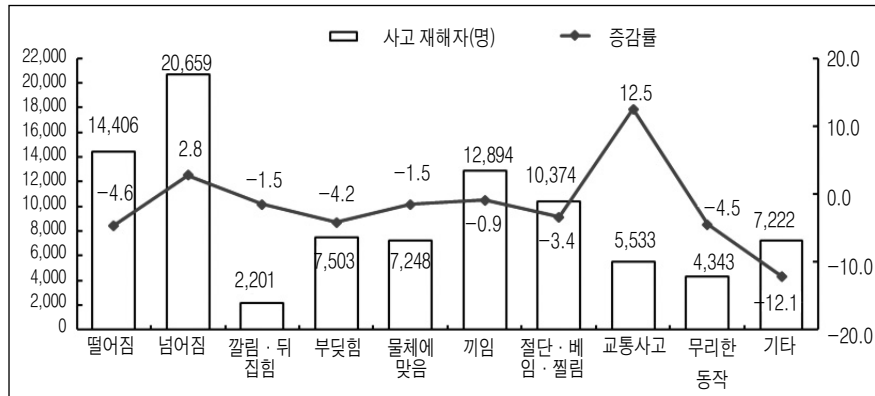
2022년 1월 27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존 국(局) 단위 조직에서 본부로 확대되어 중대재해 예방·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7월 셋째 주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이 추락·끼임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참고로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 882명 중 제조업이 201명(22.8%)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2018~2020년 제조업(사업장) 대상 끼임 위험요인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사업장 끼임사고 사망	201명	75명	66명	60명
정비·보수작업 중 사망	132명	45명	39명	48명

[그림 1] 2020년 재해유형별 재해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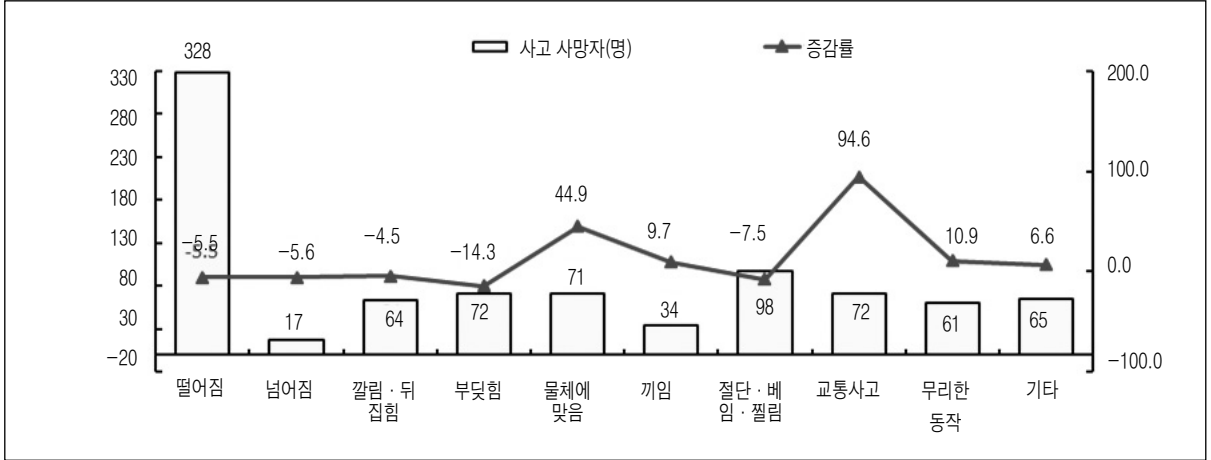


이 중 주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기술사/건설기계기술사
중부재해예방(주) 전문위원

Special Contribution(1)

[그림 2] 2020년 재해유형별 사망자 발생 현황



「끼임」 「추락·끼임사고 예방 일제점검」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일제점검」 핵심내용

’21년 7월부터 「추락·끼임사고 예방 일제점검」 시행

전국 동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시에 실시(1,800명 참여)	추락·끼임에 집중 사고사망 핵심영역 (간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 안전조치 집중점검	불량현장 강력 대응 점검 결과 위합방지 등 불량현장은 반드시 감독, 형사법조치
---	--	---

끼임 사고사망 발생사례

① 가동 중인 컨베이어 롤러이물질 제거중 끼임	② 로봇 작업영역 내에서 점검 중 끼임
③ 사출성형기 금형 설치 중 금형 사이에 끼임	④ 프레스 금형 조정 중 금형 사이에 끼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할 사항(일제점검 시 집중점검)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설치	정비, 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기동장치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	-----------------	-------------------

2021-교육혁신실-395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의 끼임사고 방지 안내문

최근 3년간 제조업(사업장) 대상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분석해보면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산업용 리프트 등 유해·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기계·설비 등을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II. 재해유형별 발생 현황(2020년)

2020년 재해유형별 재해자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절단·베임·찢림, 부딪힘 등의 순서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과열, 물체에 깔림 등의 순서로 주로 발생하고 있다.


III. 사업장의 대응방안

사업주는 전사적인 안전경영을 통한 사업장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에 의

거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예방 및 고용노동부 일제 점검 시행, 사법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를 적절하게 설치

② 작업과 관련한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전원스위치)에 잠금 조치, 표지판 설치 등

③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운전 


「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끼임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사업장명: _____
 점검일자: _____
 점검자명: _____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경우 관련 인증·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2	안전인증·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방호장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 해제하거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가?		
4	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에 대한 방지조치(덮개, 울 등 설치)는 적절한가?		
5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였는가?		
6	사용 중인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정비 작업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대상작업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시 조치절차 ① 해당 설비 등의 운전정지 ②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③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div>		
7	기계·기구 또는 설비 사용 중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8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갖춘 지게차를 자격 보유자가 조종하는가?		
9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 고용노동부의 끼임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